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20100267 홈페이지주소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2-06-14 www.610galbi.co.kr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3-05-17 대표자 메일주소

marufc@hanmail.net



[육장갈비]

정 보 공 개 서

[(주)마루FC]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마루에프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520호

[대표전화번호] 1588-9280

[대표팩스번호] 02-414-8500

[가맹사업 담당부서] 육장갈비 가맹본부 [전화번호] 1588-928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는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 표지	주 소			
(주) 마루에프씨	육장갈비 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520호			
	설립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5.11.25	2005.11.25	임완규,송주임	1588-9280	02-414-8500
	법인등록번호	110111-3349077	사업자등록번호	215-86-7839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임완규 (주) 마루에프씨	우마루 육장갈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520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완규,송주임	1588-9280	02-414-8500
대표	송주임 (주) 마루에프씨	우마루 육장갈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520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완규,송주임	1588-9280	02-414-8500
	송주임 (주) 아리솔에프씨	꽃담은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잠실한신코아오피스텔 4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인길	02-418-3113	02-412-0305

※당사의 대표이사 송주임은 2011.1~2019.3월까지 상기 (주)아리솔에프씨 꽃담은소의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 (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육장갈비]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육장갈비	
상 호	육장갈비 _____점	보통 지역명을 사용함
상표(서비스표)		상표등록일자 : 2013년 03월 05일 상표등록번호: 제 41-0253446 호 지정상품: 식당제업, 한식점업, 갈비전문 간이 음식점업 등 23건 (제 43류에 속한 상품 및 서비스)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참숯구이 소갈비전문점	

[육장갈비 소개]

Brand Concept

육장갈비 태동의 근원이 되는 50~60년대를 배경으로, 그때 그시절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모티브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기본으로 현대 디자인의 중심인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복고적인 레트로스타일, 빈티지스타일을 적절하게 응용, 조합하여 육장갈비 디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더욱이 빈티지스타일은 10대는 물론, 20~30대를 넘어 전 연령층에게 부담감없는 스타일로 전개되었고, 이는 사회전반적인 문화행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최신 트렌드와 복고적 그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감성적 소구인 것입니다.

육장갈비

육장갈비는 고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갈비를 즐길 수 있는 외식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고자 맛과 정성을 다 하여 만든 (주)마루FC의 브랜드입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33,694	232,386	601,308	710,432	100,059	97,133
2022년	943,968	116,434	827,534	1,020,136	244,395	226,225
2023년	1,187,429	130,247	1,057,182	1,179,931	243,367	229,648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사본 별첨 2]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우마루와 육장갈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원 가맹 임원입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임완규	대표이사	2005.1~2005.11.	(주)썬미트 총괄이사	가맹점 관리
		2005.11~현재	(주)마루에프씨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송주임	대표이사	2005.5~2017.8	(주)마루에프씨 감사	감사업무
		2011.1~2019.3.	(주)아리솔에프씨 대표	기업관리
		2017.8~현재.	(주)마루에프씨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 분	기 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마루에프씨/임완규, 송주임	가맹사업 경영	2012.06.~ 현재	우마루(등록번호:20080100532)이라는 브랜드의 소고기전문점 프랜차이즈사업 영위
특수관계인	(주)아리솔에프씨/송주임	다른 가맹본부[주)아리솔에프씨]의 임원으로 재직	2011.1.~ 2019.3	꽃담은소(등록번호:20141013)이라는 브랜드의 소고기전문점 프랜차이즈사업 영위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지정상품 식당체인업, 한식점업, 갈비전문점업 등 23건 (제 43류에 속한 상품서비스)	등록 2013.03.05	등록 41025344 6	(주)마루에프씨	2023.03.0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는 등록 완료된 것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육장갈비] 가맹사업 현황

1. [육장갈비]를 시작한 날: 2012년 3월 20일

2. [육장갈비] 연혁

가맹본부상 호	영업표 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마루에 프씨	육장갈 비	임완규, 김상철	2012.03.20~2012.1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407호
(주)마루에 프씨	육장갈 비	임완규, 강정범	2012.11.22~2017.08.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520호
(주)마루에 프씨	육장갈 비	임완규, 송주임	2017.08.21~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520호

3. [육장갈비] 업종

영업표지	업종	
육장갈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갈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육장갈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0	40		45	45		51	51	
서울	4	4		2	2		4	4	
부산									
대구	1	1		1	1		1	1	
인천	3	3		2	2		4	4	
광주							1	1	
대전	1	1		1	1		1	1	
울산							1	1	
세종									
경기	6	6		5	5		7	7	
강원	3	3		3	3		2	2	
충북	2	2		2	2		2	2	
충남	4	4		6	6		8	8	
전북	1	1		2	2		2	2	
전남	5	5		5	5		5	5	

경북	2	2		4	4		4	4	
경남	2	2		4	4		4	4	
제주	6	6		8	8		5	5	

5. 바로 전 3년간 [육장갈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9	12	0	11	0	40
2022	40	17	0	12	0	45
2023	45	15	0	9	1	51

6. [육장갈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육장갈비]외에도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마루에프씨	우마루	20080100523	소고기 전문점	4/0	3/0	3/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육장갈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6개월미만 영업제외
전체	51	302,625	6,027	938,749	15,713	28,679	955	※6곳제외
서울	4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해당없음						
대구	1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4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1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1	해당없음						5곳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미만
세종		해당없음						
경기	7	333,073	5,124	702,699	9,896	103,512	1,362	※1곳제외
강원	2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2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8	219,307	5,643	706,990	12,211	125,398	3,238	※1곳제외
전북	2	해당없음						5곳미만
전남	5	379,878	5,246	495,531	9,778	153,296	3,065	
경북	4	해당없음						5곳미만
경남	4	해당없음						5곳미만
제주	5	178,175	5,674	323,882	10,796	90,152	2,372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알 수 없어 아래의 추정한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3)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국 총 (51)곳 중 (45)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1	1,16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육장갈비]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따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육장갈비]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공개	68,460	68,460	—	
광고	소계	비공개	68,460	68,460	—	
판촉	소계	비공개	—	—	—	

당사는 육장갈비와 우마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가맹사업과 관련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지 점 명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잠실금융센터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	02-2203-685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마루에프씨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육장갈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전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전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용 발생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홍보비	2,2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시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게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 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 계	[2,0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본사가 공급 물품 미지급금 및 파손, 피해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정산	

※ 물류보증금은 별도이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

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18,500	
가 맹 비	11,000	
교 육 비	3,300	
개점 홍보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기준99㎡(30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임차보증금	건물주	추정불가		건물주와 협의	-	
영업권비(권리금)	전 임차인	추정불가		전 임차인과 협의	-	
필수설비(정착물)	협력업체	42,900	1,430	설치 3일 이전	발주 전 해지	1,430/3.3㎡(115.5㎡ 미만) 1,320/3.3㎡(148.5㎡ 미만) 1,210/3.3㎡(165㎡ 이상)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49,500	1,6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내	공사발주 전 해지	1,650/3.3㎡(115.5㎡ 미만) 1,595/3.3㎡(148.5㎡ 미만) 1,540/3.3㎡(165㎡ 이상)
최초공급 상품비용	협력업체	4,000 ~ 5,000		물품 공급일	발주 전 해지	
냉/난방기	미지정	10,000 내외		설치 업체와 협의	발주 전 해지	
외장 및 외부 인테리어	-	추정불가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	-	
철거비	-	추정불가		철거 업체와 협의	-	
각종인허가비용	-	추정불가		관련기관과 협의	-	
가스배관	-	추정불가		가스 업체와 협의	-	
소방	-	추정불가		소방설비업체와 협의	-	
전기승압	-	추정불가		전기 업체와 협의	-	
화장실	-	추정불가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	-	
기타					-	
합계		약 106,400 이상	약 3,546 이상		-	99㎡ (30평)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철거, 각종인허가, 전화, 냉/난방기, 도시가스, 전기승압, 외부공사, 상/하수도, 화장실, 외부다트입상, 포스기기 등]

[귀하 또는 제3자가 점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감독(감리)비용으로 총시공비용 (부가세 포함)의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가맹본부 (전화:1588-9280)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기존 가맹점과 상권이 겹치지 않는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 자에게 제시 → 가맹 희망자의 책임하에 최종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음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육장갈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내역은 점포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10%	40%	30%	20%
납부일		계약일	공사착수 전		집기입고 전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측이 배분하여 분담	협의	미 집행 시 반환	광고집행시 반환 안됨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필요시 실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해당없음					
지연 이자	가맹본부	연 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계약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적 의무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POS업체는 본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해당없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육장갈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주)마루에프씨]에 1개월 전에 통보하여 허락을 득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의 가맹비는 양도인의 남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받으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3,3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2,000]천원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 소유의 설비(집기)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마루에프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거래상대방은 본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 상기 상품은 지정거래처로부터 공급되며, 당사가 직접 공급하지는 않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우마루와 육장갈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상품 및 원·부재료의 경제적 이익은 (주)마루FC 전체의 이익에서 당 가맹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은 이보다 적습니다.

-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수취여부

※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별첨의 메뉴리스트 참조	가맹본부에서 정한 메뉴이외에는 추가 혹은 삭제하여 판매할 수 없음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됨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의 메뉴리스트 참조	별첨의 메뉴리스트 참조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서통보	2023년 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이며,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육장갈비입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 간 협의하되 가맹점간 최소 1Km이격거리 기준적용	별지에 영업 지역지도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다른 영업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나,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육장갈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육장갈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본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에 구두, 전화, 팩스, 이메일, 서면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의 통지 없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1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⑤, 아니오 →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 → 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 B, 아니오 →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E, 아니오 → A	D-60일 이전
A.	중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② 항 준용
○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육장갈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관련조항
1. “을”이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2.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을”이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정한 기준 범위를 초과한 경우 4.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5. “을”이 “갑”의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경영지도의 결과 및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을”이 노후화된 설비 일체에 대한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7. “을”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8. “을”이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9. “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이 공급하는 상품·자재의 품질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 일부 및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9조1항 (27조 참조)
1. 상대방이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조2항 (즉시계약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36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1588-9280)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또는 영업을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갑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사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본사가 위 1개월 이내에 응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처분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에 대해서는 계약 잔여기간 동안 가맹비가 면제되고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대리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본부의 계약 수정(5일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육장갈비]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갈비 및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1588-928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육장갈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균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0:00 ~ 23:00 (13시간)	개점 후 협의	문의: 운영본부 (1588-928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을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

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가 영업장에 직접 근무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권장사항입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홀 2명 이상 주방 2명 이상	권장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마루에프씨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육장갈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협의 하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가맹점과 본사와의 사전협의 결정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④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조
④ “을”이 제1항에 규정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명시한 매장면적 곱하기 평당 5,000원씩(매장평수X지체일수X5,0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연 손해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상권과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므로 총 비용은 산출 애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9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28(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9(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8(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7(27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02-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점포 환경 개선 시 비용 지원제도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1588-928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1588-928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육장갈비]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육장갈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육장갈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 고
신규 교육	7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0조5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02-1588-928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1

공급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2

공급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3

공급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4) 메뉴리스트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소갈비메뉴	육장갈비	22,000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서통보	2024년 기준
	마루소갈비	25,000		
	육장소갈비	25,000		
돼지갈비메뉴	돼지왕갈비	16,000		
	국내산돼지갈비	15,000		
	국내산생갈비	15,000		
한우메뉴	한우육회	20,000		
고기메뉴	생삼겹살	15,000		
	소갈비살	15,000		
	우꽃살	20,000		
	살치살	20,000		
	소갈비살 1근	60,000		
특선메뉴	수제왕갈비탕	13,000		
	돼지갈비정식	12,000		
	육개장	7,000		

별첨 2 - 2021, 2022, 2023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